

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
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(이인순 의원 대표발의)



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

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
전부개정조례안
(이인순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428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21년 11월 16 일
발의자 : 이인순 의원 외 10명
김일영, 노원정, 박학동, 안향자, 양순임
이광남, 이인순, 이호건, 정기혁, 정혜영, 진선아

1. 제안이유

- 상위법령인 「아동복지법」 및 「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일부개정에 따라 우리구 아동학대 예방과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를 위한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아동복지법 제17조(금지행위) 및 제23조(학대예방의 날) 등 상위법령에 근거함에 있어 나열 및 중복적 성격의 조례 정비
- 나. 아동복지법 제22조(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) 제4항 아동학대전담 공무원 임용 관련 조례안 신설
- 다. 아동학대 신고 112 일원화 및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(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) 등에 따라 개정
- 라. 아동복지법 제12조(아동복지심의위원회) 관련 우리구 아동복지심의 위원회 및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협의체 등 운영함에 있어 조례 제

7조(지역연대의 설치) 개정

마. 아동복지법 제26조(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), 제26조2(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실시) 개정에 따른 조례 제10조(교육) 개정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아동복지법」, 「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입법예고 : 2021. 11. 16 ~ 2021. 11. 21.

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아동복지법」 및 「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에 따라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「아동복지법」(이하 “법”라 한다)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다.

1. “아동”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.
2. “보호자”란 친권자, 후견인, 아동을 보호 · 양육 · 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 · 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 · 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.

3. “아동학대”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· 정신적 · 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.

4. “피해아동”이란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.

5. “아동복지시설”이란 법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.

6. “아동보호전문기관”이란 법 제45조에 따라 설치된 기관을 말한다.

제3조(금지 행위) 아동은 그 어떠한 경우에도 학대를 받아서는 아니 되며, 누구든지 법 제1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4조(책무)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에 대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

1.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
2.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조사 · 연구 · 교육 및 홍보
3.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협력 체계의 구축 및 운영

② 구청장은 학대 사실에 대한 조기발견과 신고, 보호, 치료 의뢰 및 학대 아동과 부모를 포함한 상담 · 조사 및 가정에 대한 원조와 그 밖에 학대받는 아동보호를 위한 사업을 행하여야 한다.

③ 구청장은 아동복지시설 등에서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지도·감독 및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
제5조(아동학대전담공무원 임용) ①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서울특별시 성북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 소속 공무원으로서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어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6조(아동학대 발견과 신고자의 의무)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「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10조제1항에 따라 구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.

② 「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무상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구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.

제7조(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) 구청장은 교육청, 영·유아보육시설, 아동복지시설, 아동보호전문기관, 사법경찰, 의료기관, 법률기관 등 아동학대 예방 및 치료·보호, 부모 상담을 포함한 2차 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관계 기관 간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.

- 제8조(위원회의 설치) ① 구청장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, 보호대상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심의·자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학대예방 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- ② 위원회는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」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.

제2장 시행계획의 수립 및 지원 등

- 제9조(시행계획 수립 등) ①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시행 계획을 매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-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.
1.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필요한 기본정책
 2.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
 3.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
 4.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- 제10조(사업비의 지원)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.

- 제11조(교육)** ① 구청장은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, 연 1회 이상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- ② 제1항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직접 교육을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기관의 장에게 교육을 의뢰할 수 있다.

- 제12조(홍보)** ① 구청장은 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홍보매체를 통하여 구민들에게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.
- ② 구청장은 법 제23조에 따른 아동학대예방주간에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행사와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.

- 제13조(비밀준수의 의무)** 이 조례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 등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
- 제14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 계 법령

□ 「아동복지법」

제22조(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)

- ④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아동학대전담공무원(이하 “아동학대전담공무원”이라 한다)을 두어야 한다.
- 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하고 그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·도 또는 시·군·구의 조례로 정한다.

제26조(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)

- ③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·시설 등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,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교육 내용·시간 및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26조의2(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실시)

-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,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② 아동의 보호자 등 제1항에 따른 교육 대상이 아닌 사람은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.

□ 「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

제10조(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)

-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(이하 “시·도”라 한다), 시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.
-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·도, 시·군·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.

제11조(현장출동)

①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나 「아동복지법」 제22조제4항에 따른 아동학대전담공무원(이하 “아동학대전담공무원”이라 한다)은 지체 없이 아동학대범죄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수사기관의 장이나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서로 동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, 그 요청을 받은 수사기관의 장이나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범죄 현장에 동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

제12조(피해아동 등에 대한 응급조치)

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현장에 출동하거나 아동학대범죄 현장을 발견한 경우 또는 학대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학대피해가 확인되고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·현저한 경우,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, 피해아동의 형제자매인 아동 및 피해아동과 동거하는 아동(이하 “피해아동등”이라 한다)의 보호를 위하여 즉시 다음 각 호의 조치(이하 “응급조치”라 한다)를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제3호의 조치를 하는 때에는 피해아동등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, 피해아동등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아동등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.

□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

제2조(기능)

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운영한다.

1. 「아동복지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5조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
2. 법 제16조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
3.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
4.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
5.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